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3,568,665	10,607,060
일반회계	311,831,339	9,354,940
일반회계	311,831,339	9,354,940
기타특별회계	4,023,204	120,696
장기미집행	800,372	24,011
수질개선	508,294	15,249
주택사업	644,072	19,322
의료급여기금운영	791,167	23,73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32,070	3,962
공영개발사업	419,586	12,588
농공지구조성사업	565,859	16,976
기반시설	161,784	4,854
공기업특별회계	37,714,122	1,131,424
상수도공기업	21,292,949	638,788
하수도공기업	16,421,173	492,635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별첨)"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제1회 추경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11,67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